

의안번호	제102호
의결년월일	1999. . . (제 회)

## 서산시 소하천점 · 사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중 개정 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9. 8. //.

# 서산시소하천점·사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2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. 8. //
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## 1. 개정이유

- 소하천점용료 부과기준이 하천부지(준용하천)점용과 다르게 부과됨에 따라 형평성이 결여되어 현실에 맞게 변경코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충청남도하천·공유수면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가 1996. 1. 9 개정됨에 따라 서산시소하천점·사용료등부과징수조례가 상위 조례에 위배되지 않고 형평성에 결여되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함.

## 3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
  - 충청남도 하천·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2조 (점용료의 산정기준)
  - 행정규제기본법 제5조
- 입법예고 : 해당없음
- 서산시규제개혁위원회심의('99. 6.23)결과⇒폐지

## 서산시소하천점·사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소하천점·사용료등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1중 1. 공작물의 설치(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.) 및 2. 토지(하천부지)의 점용의 산정기준란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1]

## 점 · 사용료등부과기준표

구 분	산 정 가 준
<p>1. 공작물설치(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)</p>	<p>○ 연간 점·사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의 토지가격(이하 “토지가격”이라 한다) 3/100</p>
<p>2. 토지(소하천부지)의 점·사용</p>	<p>가.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                    (1)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                         연간 점·사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유사지 농지소득 금액의 5/100                      (2) 미식부지 및 기타 작물의 경우                          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.8/100</p> <p>나.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                  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.5/100</p> <p>다. 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                  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2.5/100                      다만, 소하천 구역내의 토석,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.</p> <p>라.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                  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0.75/100</p> <p>마. 야적장을 위한 점용                    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5/100</p> <p>바.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                   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용도의 토지가격의 1.5/100</p>

# 신·구조문 대조표

현		개		정
별표 1		별표 1		
구	분	산	정	기
구	분	산	정	기
구	분	산	정	기
1. 공작물설치(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)	0	유사지 토지가격의 3/100		
2. 토지(소하천부지)의 점·사용	가.			
	(1)			
		농지소득금액의 5/100		
	(2)			
	나.			토지가격의 0.8/100
				토지가격의 2.5/100
	다.			토지가격의 2.5/100
	라.			토지가격의 0.75/100
	마.			토지가격 의 5/100
	바.			토지가격의 1.5/100

## 현 행

연간 점·사용면적에 대한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의 시가표준액(이하 "시가표준액"이라 한다) 3/100

가.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
 (1) 벼 및 특수작물의 경우  
 연간 점·사용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97조의 규정에 의한 인근 유사지 농지소득금액의 15/100 또는 시가표준액의 5/100중의 저렴한 금액  
 (2) 미식부지 및 기타 작물의 경우  
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5/100

나.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
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5/100

다. 공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
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5/100  
 다만, 소하천 구역내의 토석, 사력 등을 채취할 때에는 제6호의 요금을 가산한다.

라. 내수면 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
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1.5/100

마. 야적장을 위한 점용  
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시가표준액의 10/100

바. 기타 목적을 위한 점용  
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동일용도의 시가표준액의 3/100